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8. 7. 10 문팔갑의원의외 4인
- 나. 회 부 일 자 : 98. 7. 15
- 다. 상 정 일 자 : 98. 7. 15 (제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민 용 기

나. 개정사유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법률 제5537)이 '98. 4.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3조에 의거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으로 조정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

구분	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현 행		5	7	6
변 경		5	6 △ 1	6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석호)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정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호 "총무위원회 7명" 을 "총무위원회 6명"으로 한다.

###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8. 7. 1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변경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의회 운영위원회 5명</li><li>2. <u>총무위원회 7명</u></li><li>3. 산업·건설위원회 6명</li></ol>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현행과 같음</li><li>2. <u>총무위원회 6명</u></li><li>3. 현행과 같음</li></ol>